검 토 보 고

- I.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 Ⅱ.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 제출)
- 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764호

나. 제 출 자 : 남창진 의원

다. 제출일자 : 2015년 10월 22일

라. 회부일자 : 2015년 10월 27일

2. 제안이유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

부를 정비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4조)

비.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 제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791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출일자 : 2015년 10월 30일

라. 회부일자 : 2015년 11월 4일

2. 제안이유

○ 법률의 위임 없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도· 소매업자 또는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과 도·소매업자 또는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조정 절차

(안 제6조, 제6조의2)

- 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 위원자격, 위원임기 등의 위원회 구성 (안 제7조)
- 다. 위원장의 역할, 회의소집, 개의와 의결, 회의록 작성, 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운영 (안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제안배경

-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를 폐지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 여 그에 따른 조무을 정비하고자 함.
- 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 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임.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규정 삭제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제1항1)에 따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시인 서울시가 조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2)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¹⁾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어 협의회의 논의 안건이 제한적이고, '10년 1월 협의회 구성 이후 개최횟수가 총 5회에 불과하며 특히 14년도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현재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활동이 중단되어 관련 조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요〉

○ 구 성 일 : '10.01.07.

○ 구성목적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항 논의

○ 위 원 : 13명(경제진흥본부장 외 위촉직 12명)

○ 주요안건 :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지역·시기·규모 등 조정,

상생협력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영업시간 및 품목에 관한 사항 등

○ 개최실적 : 5회('11, 2회, '12, 1회, '13, 2회)

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안 제6조)

-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1항³)에 따르면 특별시에 '유통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그에 대 한 운영 근거가 없어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 ㅇ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이 유통에 관련된 분쟁발

³⁾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생 시에 분쟁 조정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로, 기존에 있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 중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만을 논의하는 위원회라고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및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다만, 그 동안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상정한 분쟁사례가 단한 건도 없다는 점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예상됨.

라. 분쟁조정 신청절차 (안 제6조의2 신설)

- 소상공인이 유통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자치구 유통분 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서울시 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자치구에서 조정된 분쟁 중 조정신청인이 불복한 조정안에 대해서만 서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⁴)되며, 위

⁴⁾ 자치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안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등 강제적인 효력이 없어 위원회의 조정안이 유명무실한 안이 될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의 도·소매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지방의 회의 의원은 위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 시의 도·소매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

- 위원의 선정과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어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더라도 위원회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서 일정 부분을 서울특별시의원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4조5)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촉직위원의 여성비율을 40%이상으로 구성해야하므로 해당 비율을 명시하고, 준수할 수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안 제8조의2, 제8조의3 신설)

- 개정안은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에 비밀유지 의무 위반, 제척· 기피·회피⁶⁾ 대상 안건심의참여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
- 이는 위원회의 심의의 투명성 및 분쟁조정의 공정성과 객관 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8조의2제1호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⁵⁾ 제14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⁶⁾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의 조항을 차용함.

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나 공동권리자가 되는 경우와 제2호에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척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실질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배제할 실효적인 방법이 없음.

바. 기타 조문의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자치 법규의 정비취지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사. 종합의견

- 최근 대형유통업체(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하여 지역 상권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대형마트 규제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따른 각종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에 서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
- 유통분쟁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분쟁의 발생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기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협의회 개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이름뿐인 위원회가 아닌 실효성을 갖춘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문 대비표〉

현 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별 표에 따른 대형마트·전 문점 및 백화점을 말 한다. 2. (생 략) 3. "소상공인"이란 유통산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제2조제2호에 때 른 소상공인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4~6 (생 략) 제4조(상생협력계획의 수 립·시행) ①~② (생 략) 1.~8. (생 략) ③ 시장은 상생협력계획을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지 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현 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권장 또는 협		
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		6.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
<u>항</u>		<u>항</u>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유통업상생발전협	제6조(유통업상생발전협	제6조(유통분쟁조정위원
의회) ① 시장은 대형유통	<u>의회)</u> (현행과 같음)	회) 시장은 법제36조제1
기업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분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촉		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
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		<u>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u>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특별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u>		<u> 둔다.</u>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등록된 대규모점포등
1.제4조에 따른 상생협		과 인근 지역의 도매
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자·소매업자 사이의
<u>사항</u>		<u>영업활동에 관한 분쟁.</u>
2.대형유통기업 등의 입		<u>다만, 「독점규제 및</u>
점지역·시기·규모 등의		<u>공정거래에 관한 법</u>
조정에 관한 사항		률」을 적용받는 사항
3.대형유통기업 등의 적		<u>은 제외한다.</u>
정 영업시간 및 영업		2.등록된 대규모점포등
품목에 관한 사항		과 중소제조업체 사이
4.제5조에 따른 대형유		의 영업활동에 관한
통기업 등의 지역사회		사항. 다만, 「독점규
기여와 협력에 관한 사		제 및 공정거래에 관
<u>항</u>		한 법률」을 적용받는
5.지역내 중소기업이 생		<u>사항은 제외한다.</u>
산하는 상품의 구매		3.등록된 대규모점포등
및 판로개척을 위한		과 인근 지역의 주민
협력에 관한 사항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
ı	I	

현 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6.지역 유통업의 상생협력		<u>한 분쟁</u>
및 균형발전을 위한 조		
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상생협력 유공자에 대		
한 포상 또는 포상추		
<u>천, 대정부 건의 등 상</u>		
생협력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협의회가 인정		
<u>하는 사항</u>		
8.유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분쟁의 조정에		
<u>관한 사항</u>		
<u>가.법 제36조제1항제</u>		
<u>1호에 따른 대규모</u>		
점포와 인근 지역의		
<u>도·소매업자 사이의</u>		
<u>영업활동에 관한 분</u>		
<u>쟁. 다만, 「독점규</u>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u>을</u> 받는 사항은 제		
<u>외한다.</u>		
<u>나.법 제36조제1항제1</u>		
호의2에 따른 대규		
모 점포와 중소제조		
업체 사이의 영업활		
동에 관한 분쟁. 다		
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u>다.법 제36조제1항제2</u>		
호에 따른 대규모		

현 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 경에 관한 분쟁. 다 만, 「환경분쟁조정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라.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이 어렵다고 인정되 는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등 9. 그 밖에 상생협력촉 진과 지역유통산업 발 전을 위한 협력 및 지 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개설계획이 중소유통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 을 줄 수 있을 경우 시장에 게 상권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u> </u>		제6조의2(분쟁의 조정) ①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자치구 위원회 및

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자치구 위원회에 조정·심사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자치구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협외회의 구성) ① 함의 합은 기원을 포함한 2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유통업 업무 담당 본부장이 되
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사람이 된다.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 있는 사람이 있어 있는 사람이 있어

현 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4.시 소재 중소유통기업 대표 5.시 소재 소상공인 단체 대표 6.시 소재 전통시장 대표 7.시 소재 소비자단체·시 민단체 대표 8.시 소재 상공회의소 관 계자 9.그 밖에 유통산업분야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1 C 2 -1 C	원 또는 직원 다.소비자단체의 대표 라.유통산업 분야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마.해당 지방자치단체 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시의 도·소매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의</u> 임기는 <u>2년으로한다.</u>
④ 위원장은 <u>협의회를 대표</u> 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 <u>팔한다.</u> 다만,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u>위원회를 대표</u>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 <u>괄한다.</u>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유통업 관련 업무의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서기를 각 1명씩 두되,

현 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u>협의회</u> 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심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생 략) 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u>그 밖에</u>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현행과 같음)	

현 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		6
한 <u>협의회</u> 의 운영에 관한		
항은 「서울특별시 소속		- <u>위원회</u>
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례」를 준용하거나 <u>협의</u>		위원회
L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l한다.		
<u>〈신 설〉</u>		제8조의2(위원의 제척·
		<u>기피·회피)</u> ①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
		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
		<u>이라 한다)의 심의·조정에</u>
		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
		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
		는 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건 대
		<u>규모점포등</u> , 도·소매업
		자, 중소제조업체 및
		관련 업체의 종사자인
		<u>경우</u>
		4.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
		로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현 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5.기타 위원이 해당 사
		건에 관하여 직접 이
		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의 공정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
		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
 		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
		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u>할 수 있다.</u>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u>질병 또는 6개월 이상</u>
		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
		<u>운 경우</u>
		3. 위원회 직무와 관련
		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
		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u>경우</u>

현 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4. 위원회의 직무와 관
		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고 인정되는 비위 사
		<u>실이 발생한 경우</u>
		<u>5. 금고 이상의 형을 받</u>
		고 그 집행이 종료되
		거나 집행을 받지 아
		<u>니하기로 확정된 후 5</u>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
		터 2년이 경과되지 아
		<u>니한 사람 및 금고 이</u>
		<u>상의 형의 선고유예</u>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제8조의2제3항에 해
		당하는 데에도 불구하
		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
		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
		나 그 밖의 사유로 인
		하여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u>는 경우</u>
		제9조(상생협력 촉진 지
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		
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u>판단하는 때에는</u> 예산의 범		
	안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워을 할 수 있다.	에 필요안 영·재정식 시전 을 할 수 있다.	
지원들 될 수 있다. 제10조(상권영향 조사		. 제10고 <i>(</i> 사귀여하 고치
^11U至(3 で 3 な *	[세ID=(8단장장 조각	제10조(상권영향 조사

현 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등)(현행과 같음)	등) ① 시장은 <u>상생협력계</u>
요청이 있거나 상생협력계		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u>획</u>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에 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		
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비밀의 유지) <u>협</u>	제13조(비밀의 유지) (현	제13조(비밀의 유지) <u>위</u>
의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행과 같음)	원회의 위원 및 상권영향조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		<u>사에 참여한 자는</u>
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	제14조(시행규칙)(현행과
례의 <u>시행에 관하여 필요한</u>	례의 <u>시행에</u> 필요한 사항	같음)
<u>사항은</u> 규칙으로 정한다.	은 규칙으로 정한다.	